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99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2. 조문별 검토	8
가. 제1장 총칙(제정안 제1조~제4조)	8
나.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정안 제5조~제7조)	13
다. 제3장 레저스포츠업 및 안전관리 등(제정안 제8조~제20조) ..	17
라. 제4장 관리·감독 등(제정안 제21조~제24조)	25
마.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제정안 제25조~제32조)	28
바. 부칙	3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7. 1.
3. 회 부 일: 2025.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단순하게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함과 동시에 자연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험과 성취욕을 즐기는 레저스포츠는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다양한 신종 레저스포츠 종목이 도입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2020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는 총 3,278개, 사업체의 매출액은 총 4조 4,294억원에 달하며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총 22,359명으로 레저스포츠 산업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이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미적용, 이용자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안전요원이 없거나 자격증이 없는 안전요원 채용으로 레저스포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늘어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

가선용과 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레저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레저스포츠는 레저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적 활동으로서 육상레저스포츠, 수상레저스포츠, 항공레저스포츠 등으로 구분함(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라. 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고, 레저스포츠업자의 사망, 영업 양도 및 합병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하여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레저스포츠업자는 해당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작성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2조).

사. 레저스포츠업자는 레저스포츠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레저스포츠업자는 레저스포츠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17조).

자. 레저스포츠업자는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레저스포츠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20조).

차. 시장·군수·구청장은 레저스포츠업자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22조).

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레저스포츠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의 처분을 위하여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28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 최근 자연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설치된 레저스포츠시설 및 시설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법규 및 관리감독체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 이에 제정안은 ‘레저스포츠업’ 등을 정의하고, 레저스포츠업자는 사업을 등록하고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레저스포츠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동시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정안의 구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실태조사)
제3장 레저스포츠 업 및 안전관리 등	제8조(레저스포츠업의 등록과 신고 등), 제9조(레저스포츠업의 승계 등) 제10조(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기준 및 안전검사기준) 제11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3조(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검사 등) 제14조(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검사), 제15조(검사결과의 기록·보관) 제16조(레저스포츠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사고보고 의무 및 사고조사) 제18조(안전교육),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0조(보험 등 가입)
제4장 관리·감독 등	제21조(보고·검사 등), 제22조(시정명령), 제23조(등록취소 등), 제24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5장 보칙	제25조(예산 지원), 제26조(단체 등 지원), 제27조(국제 교류 지원), 제28조(청문),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제31조(양벌 규정), 제32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레저스포츠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2024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레저스포츠 산업 민간 사업체 수는 총 5,439개, 매출액은 총 6조 4,523억원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레저스포츠산업 사업체 현황]

(단위: 개)

구분	시설업	유통업	제조업	계
2021년	2,841	931	586	4,358
2022년	3,140	1,158	627	4,925
2023년	3,567	1,228	644	5,439

주1) 공공사업체 제외

2) 육상·수상·항공 25개 레저스포츠 종목 기준(1개 사업체에서 복수 종목 운영 시 중복 허용)

- 육상: 서바이벌, 번지점프, 카트, 하강시설(쥘라인), 4륜오토바이(ATV), 스포츠클라이밍, 파크골프, MTB, X-GAME(BMX, 인라인, 보드)

- 수상: 래프팅, 웨이크보드/수상스키, 워터슬라이드, 수상오토바이, 윈드서핑/서핑, 스킨스쿠버, 카누/카약, 모터보트/파워보트, 요트

- 항공: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초경량항공기, 열기구, 스카이다이빙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스포츠과학원, 「2024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 2024.12.

[레저스포츠산업 매출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시설업	유통업	제조업	계
2021년	2,073	17,887	28,350	48,310
2022년	3,793	25,817	36,043	65,653
2023년	4,430	27,474	32,619	64,523

주1) 공공사업체 제외

2) 육상·수상·항공 25개 레저스포츠 종목 기준(1개 사업체에서 복수 종목 운영 시 중복 허용)

- 육상: 서바이벌, 번지점프, 카트, 하강시설(쥘라인), 4륜오토바이(ATV), 스포츠클라이밍, 파크골프, MTB, X-GAME(BMX, 인라인, 보드)

- 수상: 래프팅, 웨이크보드/수상스키, 워터슬라이드, 수상오토바이, 윈드서핑/서핑, 스킨스쿠버, 카누/카약, 모터보트/파워보트, 요트

- 항공: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초경량항공기, 열기구, 스카이다이빙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스포츠과학원, 「2024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 2024.12.

- 그런데, 레저스포츠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모험성을 개념 요소로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레저스포츠의 기구 및 시설기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 제정안은 레저스포츠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늘어나는 레저스포츠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응하고 이용자들의 이용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레저스포츠 및 관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들의 안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나, 수상·항공레저스포츠는 이미 다른 개별법에서 규제¹⁾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상레저스포츠에 한정하여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21대 국회 등에도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지원·규제 관련 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 된 바 있음.

1) 수상레저스포츠와 수중레저스포츠는 해양경찰청 소관의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소관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항공레저스포츠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으로 각각 규제

[레저스포츠시설업 관련 제정안 발의 현황]

회기	의안 번호	법률안(의원명)	심사 경과
19대	1900357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제정이유) 「항공법」, 「수상레저안전법」, 「건축법」 등 각기 다른 법률 적용에 따라 레저스포츠의 통합적 발전 저해와 이용자 혼란 초래 ▪ (주요내용) ▲레저스포츠의 진흥과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문체부 장관이 총괄, ▲지자체 업종 신고, ▲안전관리 기준 마련·안전검사의무 부여 등 ▪ (주요쟁점) 부처간 이권 조정(육상,수상,항공레저)	12. 6.27. 제안 13. 4.10. 상정 14.12. 4. 철회
	1911346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제정이유) 법률안 1900357과 동일 ▪ (주요내용) 법률안 1900357과 동일 ▪ (주요쟁점) 부처간 이권 조정(육상,수상,항공레저)	14. 8 .7. 제안 14.12. 3. 상정 14.12. 4. 소위 상정 15.11.26. 소위 상정 15.12. 2. 소위 상정 16. 5.29. 임기만료폐기
20대	2002940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0인) ▪ (제정이유) 법률안 1900357과 동일 ▪ (주요내용) 법률안 1900357 내용에 ▲사고발생시 즉시 사용중지, ▲지자체 자료제출 요구 등 관리감독 권한 명시 등 추가 ▪ (주요쟁점) 부처간 이권 조정(육상,수상,항공레저)	16.10.26. 제안 17. 9.19. 상정 19.11.18. 상정/소위원회 20. 5.29. 임기만료폐기
21대	2118123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정이유) 레저스포츠의 체계적 통합 관리조정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제정내용) ▲레저스포츠를 육상, 수상, 항공으로 구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시설의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예산 지원, ▲단체 등 지원, ▲국제교류 지원 등 ▪ (주요쟁점) 부처간 이권 조정(육상,수상,항공레저)	22.11. 4. 제안 23. 2. 9. 상정/소위원회 24. 5.29. 임기만료폐기

2. 조문별 검토

가. 제1장 총칙(제정안 제1조~제4조)

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레저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레저스포츠”란 레저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적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육상레저스포츠: 육상에서 레저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상레저스포츠: 수상 또는 수중에서 레저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항공레저스포츠: 항공에서 레저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그 활동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레저스포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레저스포츠시설”이란 레저스포츠 활동에 이용되는 장비·기구 등을 포함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레저스포츠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레저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4. “레저스포츠업자”란 제8조에 따라 레저스포츠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담당자”란 레저스포츠업의 운영을 위하여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설치검사”란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검사”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이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를 하여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유지관리”란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레저스포츠업자가 레저스포츠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레저스포츠시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레저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레저스포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 「수상레저안전법」
3.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항공안전법」
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7. 「관광진흥법」
8. 「국민체육진흥법」
9.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1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1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2. 「항공사업법」

○ ‘제1장 총칙’은 ①본 제정안이 레저스포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

시하고, ②‘레저스포츠’, ‘설치검사’ 등의 정의를 규정하며,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레저스포츠의 안전관리 시책을 강구하고, 레저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

○ 안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제1호나목의 ‘수상레저스포츠’ 및 제2조제1호다목의 ‘항공레저스포츠’는 「수상레저안전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항공사업법」 등에 유사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음.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도 육상레저스포츠의 일부라 볼 수 있는 산림레포츠²⁾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과 각 법률간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바다나 하천이 아닌 모든 땅 위를 의미하는 육상의 정의를 고려할 때, 산림레포츠는 육상레저스포츠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림레포츠와 육상레저스포츠의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 보임.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의2.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

9.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레저스포츠 관련 입법례]

유형	법률	관련 규정
수중레저	「수중레저법」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수상레저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항공레저스포츠	「항공사업법」	“항공레저스포츠”란 취미·오락·체험·교육·경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공중에서 낙하하여 낙하산(落下傘)류를 이용하는 비행을 포함한다]활동을 말한다.
산림레포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

- 안 제2조제7호의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안 제14조제1항에 정기안전검사를 별도로 약칭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 정기안전검사 외에 비정기안전검사 등 정기안전검사가 아닌 안전검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용어의 혼동을 막기 위해 두 정의를 단일화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기존의 수상, 수중, 항공 분야에서의 레저스포츠를 규정한 「수상레저안전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항공사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들을 따르

도록 하고 있는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도 산림레포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4조제13호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³⁾.

3) 산림청도 동일한 의견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제정 시 수정수용하겠다는 입장임.

나.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정안 제5조~제7조)

제 정 안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레저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레저스포츠 진흥 정책의 조정·집행에 관한 사항 3.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정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레저스포츠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와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레저스포츠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레저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레저스포츠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레저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레저스포츠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레저스포츠시설의 진흥 및 안전 등에 필요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대상·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의 체계적 진흥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레저스포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기본계획에 따라 레저스포츠시설의 진흥 및 안전 등에 필요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배포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지방체육회 및 비영리법인 공모를 통해 전국 단위 육·해·공 야외 레저스포츠 대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바⁴⁾,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4) 2024년은 시·도체육회에 한정, 충청북도체육회 주최 충북 괴산군 ‘레저스포츠페스티벌’에 예산 지원(기금 5억 5천만원)
(세부사업 ‘스포츠 종목보급(5161-311)’, 내역사업 ‘스포츠 종목 보급’, 내내역사업 ‘레저스포츠보급’ 중)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는 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데,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수상레저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기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들과의 정합성, 별도의 계획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체육시설, 등록·신고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⁵⁾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2차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시행되고 있음.
-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5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⁶⁾하고 있고 이에 따라 5년 단위의 계획이 2019년에 수립·시행되고 있음.
- 그 외에도 「수상레저안전법」은 안전관리계획,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은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은 항공안전정책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7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은 집행계획의 수립주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기본계획, 집행계획 등은 그 수립주기를 법률에 규정⁷⁾⁸⁾하고 있음. 따라서 집행계획이 실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의 수립주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북한인권법」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2.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3.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제3장 레저스포츠업 및 안전관리 등(제정안 제8조~제20조)

제 정 안

제3장 레저스포츠업 및 안전관리 등

제8조(레저스포츠업의 등록과 신고 등) ① 레저스포츠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레저스포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레저스포츠업 외의 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레저스포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레저스포츠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레저스포츠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다.

1. 제23조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3조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신고·변경신고 및 휴업·

폐업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레저스포츠업의 승계 등) ① 레저스포츠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레저스포츠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레저스포츠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제10조(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기준 및 안전검사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하여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안전검사기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안전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5.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방법·절차와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레저스포츠업자는 집행계획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④ 레저스포츠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레저스포츠활동에 필요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 또는 레저스포츠업자는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안전검사기준에 맞는 레저스포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 또는 레저스포츠업자가 제1항에 따라 레저스포츠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 또는 레저스포츠업자는 안전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수리·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치를 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 또는 레저스포츠업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재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검사) ① 레저스포츠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레저스포츠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주기·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검사(이하 “정기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레저스포츠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레저스포츠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검사 및 재사용 여부의 확인을 수행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검사결과와 기록·보관) ① 레저스포츠업자와 안전검사기관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안전검사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레저스포츠업자의 준수사항) ① 레저스포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안전검사기준을 지킬 것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설이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정기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여부를 확인 받지 아니한 시설이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할 것
5. 레저스포츠 업소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6. 이용약관 등 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7. 레저스포츠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사항을 지킬 것
8.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9.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결과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② 레저스포츠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레저스포츠시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전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사고보고 의무 및 사고조사) ① 레저스포츠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레저스포츠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스포츠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레저스포츠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레저스포츠업자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가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교육) ① 레저스포츠업자, 안전관리담당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레저스포츠시설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는 레저스포츠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과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험 등 가입) ① 레저스포츠업자는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레저스포츠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소규모인 시설이나 업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레저스포츠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장 ‘레저스포츠업 및 안전관리 등’은 ① 레저스포츠업을 행하려는 자가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휴·폐업·승계 절차도 마련하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안전검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행할 안전검사기관을 지정·관리하도록 하며, ③ 레저스포츠업자는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 설치검사·정기안전검사, 검사결과 기록·보관,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이행하게 하고, ④ 중대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보고 및 행정청의 조사·사용중지 명령 근거를 두며, ⑤ 업자·종사자에게 안전교육 및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안전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8조(레저스포츠업의 등록과 신고 등)는 설치기준, 안전검사 기준 등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레저스포츠업을 등록과 신고 레저스포츠업으로 구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예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또한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등)과 신고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썰매장업 등)

으로 체육시설업을 구별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이 시설의 설치기준⁹⁾만을 충족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운영 신고만을 거쳐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지만
-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승인받아야 하고 시설의 설치 단계에서도 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외에 건물, 토지 등에 관련 된 요건이 요구되며¹⁰⁾ 이후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등 신고 체육시설업에 비해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함.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추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고, 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제1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서류.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안 제9조(레저스포츠업의 승계 등)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때¹¹⁾, 지위의 승계는 안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6조(레저스포츠업자의 준수사항)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제8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레저스포츠시설의 총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레저스포츠시설 종사자 중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 현황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으로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이 레저스포츠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준수사항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추가할 것을 제시함.

1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수중레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수중레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수중레저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라. 제4장 관리·감독 등(제정안 제21조~제24조)

제 정 안
제4장 관리·감독 등
제21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스포츠업자에게 해당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 또는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레저스포츠시설 설치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레저스포츠시설·서류·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레저스포츠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레저스포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검사결과의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레저스포츠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3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장 ‘관리·감독 등’은 ① 레저스포츠업의 관리·감독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레저스포츠업자에게 자료 제출, 보고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그 외에 시정명령, 등록취소,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3조(등록취소 등)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레저스포츠업 이

용약관 등 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결과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명령이 아닌 등록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레저스포츠업이 일반 체육시설업에 비해 안전관리가 더 필요할 수는 있으나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으로 사업자에게 다시 한 번 시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직접적인 처분을 규정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해서 레저스포츠업자와 체육시설업자 간의 규제 및 처벌의 형평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마.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제정안 제25조~제32조)

제 정 안
제5장 보칙 제25조(예산 지원) 국가는 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단체 등 지원) 국가는 레저스포츠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 개선 및 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등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국제교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안전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레저스포츠업의 영업을 한 자 2. 제14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폐쇄 명령 또는 정지 명령을 받고 그 레저스포츠업의 영업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5장 ‘보칙’은 ① 레저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국가의 예산 지원,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제교류 지원 등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② 그 외에 청문,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 제6장 ‘벌칙’은 법정의무사항을 위반한 레저스포츠업자 등에게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규정 및 주의의무를 다한 법인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레저스포츠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 안 제32조(과태료)와 관련하여 레저스포츠업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한 다른 법률의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높은 수준의 과태료 부과는 위하효과 등으로 인해 범죄예방과 위험사고 억제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자전거, 마라톤 등 저위험·소규모 레저스포츠업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법률과의 비교 등을 통해 적절한 처벌수준의 부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레저스포츠 대상 과태료 규정]

위 반행 위	제 정 안	수상레저법	수중레저법	항공사업법	산림 법	체육시설법
보험 미가입	1,0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허위 보고 또는 자료체출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	500만원 이하	-	-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

바. 부칙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레저스포츠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레저스포츠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 ‘부칙’은 본 제정안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을 규정하고, 레저스포츠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제142호의2에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신설할 수 있도록 ‘안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¹²⁾¹³⁾.

12) < 수정안 >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14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2의2.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3) < 유사 입법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별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0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51. 수상레저안전법

25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460. 항공사업법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 관련 사업 및 추진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레저스포츠보급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한 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 (사업대상) 레저스포츠시설 사업자 등
-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국민체육진흥공단 수행)
- (주요내용) 레저스포츠 시설 안전점검, 레저스포츠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야외 레저스포츠 대회 지원 등
- ('25년 예산) 9억원 ※ 야외 레저스포츠대회 미반영

□ 세부 추진 내용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1년	1,597	국민체육진흥공단	○ 레저스포츠시설 251개소 점검 ○ 레저스포츠 안전교육 254명 수료 * 온라인 254명
'22년	1,800	국민체육진흥공단	○ 레저스포츠시설 147개소 점검 ○ 레저스포츠 안전교육 763명 수료 * 대면 176명, 집체 280명, 온라인 307명
'23년	1,500	국민체육진흥공단	○ 레저스포츠시설 150개소 점검 ○ 레저스포츠 안전교육 904명 수료 * 대면 194명, 집체 343명, 온라인 367명
'24년	1,500	국민체육진흥공단	○ 레저스포츠시설 161개소 점검 ○ 레저스포츠 안전교육 519명 수료 * 대면 230명, 집체 63명, 온라인 226명

○(레저스포츠시설 안전점검) 육상레저스포츠 7개 종목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 안전점검 지표 및 체크리스트2에 기반한 4개 분야 점검(시설·장비·운영·위생),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지자체·사업장 대상 점검결과 공유(우편·공문)

* 2024년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점검 결과('25년 170개소 점검 진행 중)

구 분 (단위 : 개소)		합계	번지점프	하강 시설 (썰라인)	산악 오토바이 (ATV)	소형경주 자동차 (KART)	서바이벌	산악 자전거 (MTB)	X-GAME (인라인, BMX등)
결과	양호	114	2	17	14	18	31	1	31
	보통	47	1	4	23	4	10	-	5
합 계		161	3	21	37	22	41	1	36

○(레저스포츠시설 안전교육) 육상레저스포츠 사업자 대상 사업장별 1:1 밀착교육 (일반 이용자, 지자체 공무원 대상 집합·온라인 교육 병행)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 레저스포츠산업의 시장 규모 추정 및 정책 수요 발굴

○(레저스포츠 현장체험 프로그램) 레저스포츠 체험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 대상 2박 3일간 레저스포츠 체험 캠프 운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야외 레저스포츠 대회) 지방체육회 및 비영리법인 공모를 통해 전국 단위 육·해·공 레저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